‘악의적 소 제기’의 판단 요건을 설시한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1)]

쟁점	타인의 저작권 및 등록상표와 유사한 형상을 디자인 등록받아 전리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악의적 소 제기’인지 여부
판시사항	법원은 디자인 등록 시 실질심사가 없다는 제도적 특징을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권 및 상표권과 유사한 형상을 디자인으로 등록받고, 정당성이 결여된 권리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바탕으로 침해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신의성실원칙(诚实信用原则) 위배 및 주관적 악의(主观恶意)에 해당하는 ‘악의적 소송(恶意诉讼)’임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액 50만 위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다.
시사점	본 사안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2019년 중국법원 10대 지식재산권 사건’ 중 하나로, 악의적 소송의 성립 요건인 ① 주관적 과실, ② 침해행위, ③ 손해를 미치는 결과, ④ 침해행위와 손해를 미치는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신의성실원칙을 골자로 하여 세부적으로 사안을 분석·설시한 사례에 해당한다. 특히 법원이 ‘주관적 악의’와 관련하여 권리의 정당성, 합법적 권리 여부에 대한 판단능력, 소권의 타당성 등에 관해 다방면으로 설시하고, 지식재산권 출원·활용 시 신의성실원칙의 준수 여부를 강조하였다는 측면에서, 규범에 맞는 지식재산권 소송 질서의 적극적 기능에 대해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심 급	1 심 (원 심)	2 심 (항 소 심)
당사자	원고: 선전 Tencent 컴퓨터 시스템社 (深圳市腾讯计算机系统有限公司)	항소인: 탄파원 (谭发文, 홍콩Ourway테크社 주주 및 이사)
	피고: 탄파원 (谭发文, 홍콩Ourway테크社 주주 및 이사)	피항소인: 선전 Tencent 컴퓨터 시스템社 (深圳市腾讯计算机系统有限公司)
법 원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深圳市中级人民法院)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广东省高级人民法院)
사건번호	(2017)粤03民初632号	(2019)粤民终407号
판결일자	2018년 11월 12일	2019년 6월 10일
판결결과	원고 승소	항소 기각, 원심판결 유지
관련 지재권	**[원고의 등록상표]** vs.	**[피고의 등록디자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2)] 제64조 민법통칙[3)] 제4조 침권책임법[4)] 제6조 제1항, 제15조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제1호

 # 악의적 소 제기, # 악의적 소송(恶意诉讼), # 주관적 악의(主观恶意), # 신의성실원칙(诚实信用原则)

1) 본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문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활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은 타인의 저작권 및 등록상표와 유사한 형상을 디자인으로 등록받아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악의적 소 제기'에 해당하는지와 그 민사적 책임이 쟁점이었다.

Ⅱ. 판시사항

고급인민법원은 실질심사가 없다는 중국 디자인 등록제도의 특징을 이용하여 피고가 원고의 "QQ펭귄" 저작권 및 상표권과 유사한 형상을 디자인으로 등록받고, 해당 디자인이 정당성이 결여된 권리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바탕으로 원고에게 침해 소송을 제기한 피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원칙(诚实信用原则) 위배 및 주관적 악의(主观恶意)에 해당하는 '악의적 소송(恶意诉讼)'임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액 50만 위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다.

Ⅲ.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선전 Tencent 컴퓨터 시스템社(이하 '원고')는 "QQ펭귄QQ企鹅" 시리즈의 미술작품 저작권 및 제9류 컴퓨터 주변설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 " 상표의 권리자이다. 홍콩 Ourway테크社傲为科技（深圳）有限公司의 주주 및 이사인 탄파원谭发文(이하 '피고')은 "스피커 (Xzeit 미니펭귄형)" 디자인(ZL200830254103.6, 이하 '계쟁디자인')의 권리자이다. 당해 계쟁디자인은 2008년 12월 23일에 출원되어 2010년 1월 13일에 등록되었다.

원고는 Ourway테크社의 홈페이지와 홍보물에서 자신의 미술작품 및 상표권과 유사한 " " 이미지의 스피커 제품(이하 'QQ펭귄스피커')을 발견하고, 2010년 12월 6월에 대리인을 통하여 QQ메신저로 해당 제품 30개를 850위안에 구매하였다. 2011년 3월 9일, 원고와 Tencent과학기술(선전)社(이하 'Tencent사')는 피고와 Ourway테크社가 판매한 'QQ펭귄스피커'가 자신들의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선전시 푸톈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348, 349호 사건').[5] 2011년 5월 23일, 쌍방 당

2) 《민사소송법(民事诉讼法)》은 1991년 4월 9일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2007년에 제1차 개정, 2012년에 제2차 개정되었다. 현행법은 2017년 6월 27일에 제3차 개정을 거쳐 시행중이다.
3) 《민법통칙(民法通则)》은 민사활동 공통의 문제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 민법 체계 중의 일반법에 해당하며 총 9장 제156조로 구성되어 있다. 1986년 4월 12일에 제정되어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4) 《침권책임법(侵权责任法)》은 권리 침해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규율하는 법률로, 총 8장 제9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법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기본법률'에 속한다. 본 법률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증가한 권리침해행위 대항의 필요성과, 유럽·미국 등의 침권책임법 개정의 영향을 받아 2009년 12월 26일에 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5) (2011)深福法知民初字第348 、349号 (선전시 푸톈구(福田区)인민법원)

사자는 위 사안에 대하여 피고와 Ourway테크社가 'QQ펭귄스피커'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피고가 원고와 Tencent社에게 2.5만 위안의 배상을 약정한다는 화해합의和解协议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본 합의 체결 과정에서 1개월 내 자신의 디자인 등록 취하를 보장한다고 발언한바 있다.

2016년 2월 25일, 피고는 원고와 본 사건 제3자 중커루이청社深圳市中科睿成智能科技有限公司가 생산·판매한 펭귄스피커가 자신의 "스피커 (Xzeit 미니펭귄형)" 디자인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이하 '중급인민법원')에 침해금지 명령 및 90만 위안의 디자인 실시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236호 사건').[6] 이에 원고는 2000년 8월 15일에 완성되어 2001년 6월 20일에 등록된 "QQ펭귄 LOGO시리즈" 저작권증과, 2001년 8월 31일에 출원되어 2002년 12월 7일에 등록된 제1915548호 " " 상표등록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2016년 3월 21일 전리복심위원회에 피고의 계쟁디자인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전리복심위원회는 피고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원고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을 권리로 등록받고 실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합리적 권익에 손해를 미쳐 《전리법》 제23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7] 피고의 디자인 권리를 전부 무효화한다고 선고하였다.[8] 이를 바탕으로 중급인민법원은 계쟁디자인이 전리권 수여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가 합법적 권원으로 법원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을 중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미치는 손해를 해결하기 위한 피고 측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디자인이 전리권 수여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알면서도 악의(恶意)적으로 '236호 사건' 전리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사과문 발표赔礼道歉, 영향력 제거 및 소송비용 부담을 청구하는 소송을 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하였다.

1. 중급인민법원의 판시사항[9]

본 심리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한 행위가 악의적

6) (2016)粤03民初236号 민사판결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2016년 8월 5일 선고.)
7) 《전리법(2000년 개정)》 제23조
전리권을 부여하는 디자인은 공지디자인(现有设计)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어떠한 단체(单位)나 개인이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전리행정부서에 출원한 적이 없으며, 출원일 이후 공고된 전리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전리권을 부여받는 디자인은 공지디자인(现有设计) 또는 공지디자인의 특징과 비교하여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전리권을 부여받는 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상호 충돌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법률에서 말하는 공지디자인(现有设计)이란 출원일 이전에 중국 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디자인을 지칭한다.
8) 제29537호 무효선고청구심사결정서 (전리복심위원회 2016년 선고.)
9) (2017)粤03民初632号 민사판결 (선전시 중급인민법원 2018년 11월 14일 선고.)

소송(恶意诉讼)에 해당하는지 및 법률적 책임 문제가 쟁점이었다. 2018년 11월 14일,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소송청구를 정당한 권원이 결여된 상태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부당하게 전리권 침해소송을 제기한바, 이는 신의성실원칙(诚实信用原则) 위배 및 주관적 악의(主观恶意)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어, 원고가 피소됨으로써 입은 손실과 "QQ펭귄[QQ企鹅]"의 인지도가 높다는 점, 피고의 주관적 악의(主观恶意)가 분명하고 침해 정황의 죄질이 불량(恶劣)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손해배상액 50만 위안을 선고하였다.

(1) 악의적 소송(恶意诉讼)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급인민법원은 "신의성실원칙(诚实信用原则)"이란 시장참여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본 규범으로, 성실한 노동을 통한 사회적 부의 축적을 지지·장려하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며 이러한 과정으로 형성된 재산적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타인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공공의 이익, 시장질서에 손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의 이익 추구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중급인민법원은 민사소송 역시 이러한 신의성실원칙을 기반으로 법률·규정 내의 당사자 권리행사 및 민사적 권리와 소권을 보장하며, 타인 및 사회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전제 하에서의 선의적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법률 목적과 정신을 위배하고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해칠 목적으로 정당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모두 '권리남용(权利滥用)'에 해당하여 법률적 보호 및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한편 중급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불법적이거나 정당치 못한 권리를 취하고자 법률적·사실적 근거 없이 고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를 "악의적 소송(恶意诉讼)"이라 통칭한다면서 이는 부당한 권리행사이자 권리남용으로, 본질적으로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률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단언하였다.

중급인민법원은 "악의적 소송(恶意诉讼)"의 성립 요건으로,[10] 주관적 과실(主观过错), 침해행위(侵权行为), 손해를 미치는 결과(损害后果), 침해행위와 손해를 미치는 결과 간의 인과관계(侵害行为和损害后果之间有因果关系)를 언급하였다. 즉 ⅰ) 일방당사자가 지식재산권 소송 제기를 통하여 어떠한 청구를 제시(提出了某项请求)하고 ⅱ) 청구를 제시한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ⅲ) 실제 결과에 손해가 초래되어야 하고 ⅳ) 청구를 제시한 일방당사자의 지식재산권 소 제기 행위와 손해가 초래된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의 소 제기가 악의적 소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다.

10) 중급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침권책임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악의적 소송" 성립 요건을 제시하였다.

① 지식재산권 소 제기를 통한 어떠한 청구 제시

중급인민법원은 '어떠한 청구 제시(提出了某项请求)'에 대하여, 통상 일방당사자가 법률적으로 부여된 소권을 이용하여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다른 당사자를 소송과정에 끌어들여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중급인민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36호 사건'을 제기하고 원고의 침해 인정과 디자인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며 원고를 전리권 침해소송으로 끌어들인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악의적 소송"의 첫 번째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청구를 제시한 당사자의 주관적 악의

중급인민법원은 '악의(恶意)'란 청구를 제시한 일방당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부족한 청구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다른 당사자의 재산 또는 신용에 손해를 미칠 의도로 권리 설정 시의 목적을 위배하고 부당하게 소권을 행사함을 지칭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중급인민법원은 '348, 349호 사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본 사건 "QQ펭귄QQ企鹅" 미술작품에 대한 선저작권을 보유하고 등록상표 선사용 중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중국 디자인 출원 시 실질심사가 없다는 제도적 특징을 이용하여 "QQ펭귄QQ企鹅" 이미지와 기본적으로 일치한 디자인을 출원·등록받은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악의적 출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피고가 자신의 계쟁디자인이 실질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권리를 등록받고 부적절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불법적인 시장경쟁 이익을 꾀한바, 중급인민법원은 이러한 권리 행사가 명백한 주관적 악의(主观上的恶意)라고 비판하였다. 더욱이 '348, 349호 사건' 조정 과정에서 피고가 분명히 자신의 디자인이 원고의 미술작품과 기본적으로 일치함을 인지하고 또 해당 디자인 등록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해결 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연차료를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에게 침해주장을 제기하여 재산 및 신용 측면에 손해를 미친바, 중급인민법원은 주관적 악의가 명백(主观恶意明显)하고 정황의 죄질이 불량(情节恶劣)하다고 지적하였다.[11]

피고는 조정·화해 과정에서 인정 또는 타협된 사실이 후속 소송의 불리한 증거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중급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사법해석》[12] 제170조[13]

11) 이 밖에도 피고는 원고의 미술작품이 2차원의 평면작품이고, 자신의 디자인은 입체작품으로 양 당사자의 권리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주관적 악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으나, 중급인민법원은 이를 담아내고자 한 방식이 다를 뿐 원고의 미술작품과 피고의 디자인이 표현하고자 한 내용이 QQ펭귄 형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 정식명칭은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的解释)》으로, 2014년 12월 18일에 제정되어 2015년 2월 4일부터

는 동일 사건에 대한 조정·화해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규정인 반면, 본 사안은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348, 349호 사건'과는 다른 지식재산권에 대한 악의적 소 제기 관련 사안이고, '348, 349호 사건'의 "조정기록调解笔录"에서 증명된 사실이 뒤집히기 위해선 이를 반증하기 위한 추가 입증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③ 손해를 미치는 결과

중급인민법원은 원고가 '236호 사건' 소송 대응을 위하여 지출한 '대리인·공증·자료 등의 비용'이 피고의 악의적 소 제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④ 침해행위와 손해를 미치는 결과 간의 인과관계

중급인민법원은 침해행위와 손해를 미치는 결과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소권 남용으로 인해 초래된 상대방의 사회적 명성 저하, 재산적 손실 등이 '손해를 미치는 결과'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전리사건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다는 특성상 대리인을 선임하고 입증에 필요한 공증비·자료비·출장비 등을 지출한 점은 상식적인 도리常理에 부합하는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시하였다.

(2) 법률적 책임 문제

중급인민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결여된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악의적으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민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14] 이에 중급인민법원은 ⅰ) "QQ펭귄"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및 선사용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가 실질심사가 없다는 디자인 등록 제도를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출원한 행위는 주관적 악의가 분명한 점, ⅱ) '348, 349호 사건' 조정 후 피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원고에게 디자인 침해 소송을 제기한바, 주관적 악의가 분명하고 정황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

시행되었다.

13) 《민사소송법사법해석》 제170조
소송 중 당사자가 조정협의(调解协议) 또는 화해협의(和解协议)를 달성하기 위하여 타협하거나 인정한 사실은 후속소송 중 불리한 근거로 적용할 수 없되, 단 법률적으로 별도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침권책임법》 제6조 과실책임원칙
행위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민사적 권익(民事权益)을 침해할 경우 마땅히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법률에 근거하여 행위자가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행위자가 자신이 과실 없음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마땅히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침권책임법》 제15조 제1항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은 주로 ① 침해 중지(停止侵害), ② 장애요소 제거(排除妨碍), ③ 위험해소(消除危险), ④ 재산반환(返还财产), ⑤ 원상복구(恢复原状), ⑥ 손실배상(赔偿损失), ⑦ 잘못에 대한 사죄(赔礼道歉), ⑧ 영향제거·명예회복(消除影响、恢复名誉)이 있으며, 이상의 권리침해 책임 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함께 적용할 수도 있다.

iii) 본 사건 심리 기간 중 피고가 악의적 소 제기 행위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등록디자인에 대한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주장하여 실질적으로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합법적인 형식으로 덮고자 함으로써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점,[15] iv) 소송으로 인해 원고가 지불한 비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50만 위안을 산정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상업적 명성에 영향을 받았다는 입증이 없고[16] 위의 산정된 손해배상액으로 원고의 경제적 손실 보전이 가능하므로, 웹사이트 및 신문에 공개 사과문 발표赔礼道歉 및 영향력 제거에 대한 원고의 소송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하였다.

2. 고급인민법원의 판시사항[17]

항소심에서는 피고에게 악의적 소 제기에 대한 민사적 책임이 있는지, 원심에서 선고된 손해배상액이 합리적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광둥성 고급인민법원(이하 '고급인민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다.

고급인민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236호 사건'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주관적 악의(主观恶意)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유에 관하여, ⅰ) 피고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쟁디자인을 출원하고 '236호 사건' 소송을 제기한바, 해당 디자인이 권리 수여요건에 합법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고, ⅱ) '348, 349호 사건' 관련 조정·화해 단계에서 피고가 자신의 디자인이 합법적 권리로 인정받기에는 사실 및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여겼던바, 당시 작성된 화해서调解书를 본 사안에 대한 사실근거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아울러 ⅲ) 계쟁디자인이 합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권리임을 알면서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계쟁디자인 무효심판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36호 사건'에 참여하였으며, 대리인 위탁 과정에서도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침해소송을 강행한바, 고급인민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소권의 선의적 행사(善意行使)에 위배되고 타인의 권익에 손해를 미치고자 한 고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18]

---

15) 《민법통칙》 제4조
민사활동은 마땅히 자원(自愿)·공평·등가보상(等价有偿)·신의성실원칙(诚实信用的原则)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민사소송법》 제64조
당사자는 자신이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법원이 사건 심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는 법원이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법원은 법정 절차에 따라, 전면적·객관적으로 증거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7) (2019)粤民终407号 민사판결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2019년 6월 10일 선고.)
18) 《민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은 마땅히 신의성실원칙(诚实信用原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법률이 부여한 소송권리를 선의로 행사하여야 하며,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타인의 권익에 손해를 미치거나

더불어 고급인민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236호 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소송대응 및 계쟁디자인 무효화 과정에서 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비용이 발생되었고, 원고와 중커루이청社의 QQ펭귄스피커 생산·판매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고급인민법원은 "행위자 과실로 타인의 민사적 권익을 침해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침권책임법 제6조,[19] "악의로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전리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하여[20] 피고에게 민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21]

피고는 원고가 지불한 소송비용은 5.9만 위안에 불과하다며 원심에서 선고된 손해배상액 50만 위안은 과도하게 높다고 주장하였으나, 고급인민법원은 원고가 계쟁디자인의 무효심판 절차와 '236호 사건' 및 본 사건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본 사건 제3자 중커루이청社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원고가 입게 된 상업적 명성의 손실 등을 인정하여 50만 위안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다. 고급인민법원은 악의적 소 제기로 타인에게 미치는 손실은 직접손실과 간접손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손실의 구체적 액수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침해정황 및 악의적인 정도를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ⅰ) 원고가 지출한 '236호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 3.5만 위안, 무효심판 청구비 1,500위안, 본 사건 1심의 변호사 선임비 2만 위안 및 공증비 4천 위안은 합리적 지출에 해당하며, 비록 증거 제출은 없었으나 본 사건 2심의 변호사 선임비와 출장비 역시 실제 발생하였고 합리적이며 필요한 지출이므로,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인정한다고 설시하였다. 더불어 고급인민법원은 ⅱ) 실시료나 실시허가로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에 대한 원고측 증거제출은 없었지만, '236호 사건'이 원고가 중커루이청社와 계약을 종결하게 된 사유로 작용하였으므로, 상업관례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요소로 참고하였다. 최종적으로 고급인민법원은 "QQ펭귄"의 인지도, 피고가 합법적 정당성 없이 계쟁디자인을 악의적으로 출원한 점, '348, 349호 사건' 조정 후 여전히 피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악의적으로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실시료 90만 위안을 요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주관적 악의가 명백하며 침해정황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손해배상액 50만 위안을 유지한다고 설시하였다.

불법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악의(恶意)로 소송절차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19) 《침권책임법》 제6조 본문 각주 14 참조.

20) 《전리법》 제47조 제2조
전리권 무효선고 결정은 전리권 무효를 선고하기 이전에 인민법원에서 판결하고 집행한 전리권 침해에 관한 판결·조정서에 대하여 이미 이행하였거나 강제 집행한 전리권 침권 분쟁의 처리결정·이미 이행된 전리실시허가계약과 전리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소구력을 가지지 아니 한다. 단 전리권자가 악의(恶意)로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1) 《민법통칙》 제106조 제2항
공민(公民), 법인이 과실로 국가·집단(集体)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재산·인신(人身)을 침해할 경우 마땅히 민사적 책임을 져야한다.

Ⅳ. 시사점

대상 판결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2019년 중국법원 10대 지식재산권 사건' 중 하나로,[22] 전형적인 지식재산권 악의적 소송 사건(恶意诉讼案件)에 해당한다.

중국 현행법상 '지식재산권을 남용한 악의적 소 제기에 관한 손해책임'은 그 사유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을 뿐 사건 유형의 구성요건, 침해책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처리 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동일하지 않은 기준이 적용되던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사건 법원은 악의적으로 제기한 지식재산권 소송이 본질적으로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악의적 소송(恶意诉讼)'이 성립되기 위해선 ① 주관적 과실(主观过错), ② 침해행위(侵权行为), ③ 손해를 미치는 결과(损害后果) 그리고 ④ 침해행위와 손해를 미치는 결과 간의 인과관계(侵害行为和损害后果之间有因果关系)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중국 《민법통칙》과 《침권책임법》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위 두 법률은 2020년 5월 28일에 《민법전(民法典)》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민법전으로의 대체를 앞두고 있다.[23]

'주관적 악의(主观恶意)'를 판단하기 위해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일방당사자가 꾀하고자 한 청구가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이 청구를 제시한 당사자가 악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의 입증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일방당사자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야 하고, 이 때 발생된 손해가 악의적 소 제기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가 소송을 제기했던 '236호 사건'의 권리 정황과 계쟁디자인에 대한 판단 능력, 소송관련 표현 및 항변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가 자신의 소송청구는 정당한 권원이 결여된 상태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부당하게 전리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성실원칙(诚实信用原则)에 위배된 주관적 악의(主观恶意)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주관적 고의에 의한 악의적 소 제기를 인정한 법원 판단은 상표브로커에 의해 종종 분쟁에 휘말리는 우리기업들에게 반가운 사례라 할 수 있다. 과거 엄격한 법률 적용 기준으로 소송 시 입증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달리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라는 국가 차원의 기조에 힘입어 점차 권리자 친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24] 다만 권리자를 강

22) 2019年中国法院10大知识产权案件
23) 《민법전(民法典)》이 2021.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민법통칙·계약법·침권책임법·혼인법·상속법·수양법·담보법·물권법이 폐지될 예정이다.
24) 2019년 11월 24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지재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을 발표하여, 침해행위 처벌 및 대외협력 강화, 지재권 신속보호기구 설립과 함께 2022년까지 빈번한 지재권 침해발생, 권리침해 입증의 어려움, 긴 소송기간과 높은 소송비용, 낮은 배상금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2025년까지 지재권 보호체계 개선, 사회적 만족도와 보호능력 제고, 지재권 가치 존중 환경 최적화, 지재권 제도 기반 혁신 장려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하게 보호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외국인 당사자로서 중국에서의 입증 과정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여전히 부담스러운 과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사건 원고가 피고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취했던 '348, 349호 사건'과 조정·화해 과정이 기록된 화해서调解书, '236호 사건'에서 피고가 실시료로 90만 위안을 청구한 점 등 타인의 부당한 권리 행사에 대하여 당사자의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선행되었기에 법원으로부터 쉽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처럼 본 판결은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침해행위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주관적 악의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의 특징에 근거하여 권리기초, 판단능력, 소송관련행위 및 항변이유 등 다방면으로 설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식재산권 출원·활용 시 신의성실원칙(诚实信用原则)의 준수 및 규범에 맞는 지식재산권 소송 질서의 적극적 기능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www.cnipa.gov.cn/zscqgz/1143991.htm (2020.4.20.15시 방문)
이에 2020년 4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0-2021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추진계획(2020-2021年贯彻落实《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推进计划)"에서 법제도 정비와 집행역량 강화, IP데이터센터 구축 등의 지원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www.sipo.gov.cn/zscqgz/1147678.htm (2020.4.20.15시 방문)